

전기통신 사업체의 변천

申 龍 徹

I. 서론

DACOM에서는 국제통신 할때 자사의 국제번호 002를 사용하면 요금이 5% 저렴하다고 선전한다. 이에 대하여 한국통신은 자사의 국제번호 001을 사용하면 회선이 많아 빠르고 잘 걸리며, 통화 품질이 좋다고 선전한다. 또 어떤 미국 국제전화 재판매 회사는 韓美간 국제전화 요금의 차이를 이용, 착신요금제를 이용하여 한국통신보다 20~40% 싸게 국제전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내에 회사를 설립하겠다고 한다. 이것은 미국 등의 예와같이 통신 사업의 다원화로 자유경쟁 시대로 가고 있음을 말한다. 우리나라도 전기통신사업의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80년대에 이르러 전기통신법을 개정, 전기통신사업을 체신부로부터 분리, 한국전기통신공사를 설립하고 전자공업과 컴퓨터 산업의 발달에 따른 앞으로 정보통신 선진국 진입을 장기적 목표로 다시 동법을 개정, 한국전기통신공사 외에 여러 전기통신 사업체의 설립을 가능케하여 사업의 다원화에 의한 개방과 경쟁력을 택하고자 하는데 있다.

II. 미국의 과정

최초로 전기통신 사업이 시작된 미국의 경우, 1837년 Morse씨의 전신기 발명으로 전신사업이 시작되었고 39년후인 1876년 Bell씨의 전화기 발명으로 전화사업이 시작되었다. 당시 전신회사와 전화 회사간의 영역 문제가 발생하여 전신과 전화사업이 일원화 되

지 못하고 부자연스럽게 이원화 되었다.

이에 따라 전신사업은 Western Union사로 발전되었고, 전화사업은 크게 변형하여 미국의 전화기 대수 80%를 소유하는 Bell계 전화 운영회사(BOC, 22개사), 주간(州間) 장거리 통신망을 운영하는 장거리사업부(long line department), 거대한 Bell 전화 연구소와 전기통신 기재 생산회사인 Western Electric사(W.E.사)를 가진 종업원 100만명에 이르는 Bell계의 AT&T가 생기게 되었다. 나머지 20%는 General Telephone Co.를 위시하여 현재 1400개의 독립 전화회사로 구성되어 있다. 이 독립 전화회사는 한 지역에 2개사까지 난립 경쟁한 때도 있었으나, 1948년에 이르러 지역내 독립 전화회사들은 단일화 되었고, 한때 그 수가 7000개까지 이르렀던 독립 전화회사가 현재는 1400여개사로 통합 되었다. 그러나 AT&T에서는 자사 연구소에서 연구개발하고 지사 제조회사에서 생산하여 제품을 자사 전화운영회사에 사용하는 독점체제 즉, 연구개발(Bell연구소), 생산(W.E.사), 운영(BOC)의 3위일체의 독점 사업체였다.

이 거대한 AT&T에 대하여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는 AT&T의 독점 비대함과 Bell연구소의 빛나는 성과에 기인한다. 이 연구소는 설립 후부터 그 성과가 좋아 매일 1건의 비율로 연구개발품이 출현될 정도였으며 그후에는 이 선을 훨씬 능가하게 되어 현재 세계 중요한 전기통신 기술이 연구소 자산이 아닌 것이 없을 정도로 기술혁신에 공헌한 바가 크다. 그중에서도 1947년 J.Bardeen, W.H. Brattain 및 W.Shockley 등에 의한 transistor 발명으로 전자공업과 컴퓨터 산업의 혁명이 오게 되었다. Microwave Mriode(1944), stabilized

travelling wave tube(1945) 등의 발명으로 대용량 microwave 무선방식에 의한 전국통신망 건설이 시작되었고, 이같은 새로운 전송기술은 전기 통신과 TV방송의 2분야에서 무한한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1960년대에는 solar cell(1954) 등의 발명과 Telstar 1호 발사의 성공으로 인공위성을 통해 대서양 횡단 TV방송 시작등으로 위성 통신 방식이 급속도로 발전하게 되어 종래의 전기통신 방식에 대한 강력한 대체 기술로 등장하게 되었고 또 광섬유 케이블에 의한 통신방식도 등장하게 되었다.

1956년 독점금지법 위반 소송에 대한 법무부와 AT&T간의 화해 성립의 결과로 Bell 연구소의 연구 결과로 취득된 많은 특허를 일반에 공개하여야 한다는 법정의무가 생기게 되어 AT&T는 그 과학적 지식과 성과를 보급하면서 많은 기업이나 산업체에서 Bell 연구소가 개발한 신기술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또 전자공업의 발달에 따라 통신기술과 컴퓨터 기술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AT&T사 내에서도 경쟁이 발생하고 microwave 산업계에도 장거리 통신분야에 대한 경쟁적 참여가 시작되는 등 AT&T에 대한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1956년의 화해로 AT&T의 분할은 면하게 되었으나, 1934년에 제정된 통신법 TITLE II에 규정된 규제대상 서비스 외(비통신서비스)에 AT&T 참여가 불허되어 타산업에의 진출이 계속 제한을 받게 되었다.

그후 FCC(Federal Communication Commission)는 단말기 메이커의 요청을 받아들여 일정한 조건하에서 Bell계 외 단말기도 Bell계의 network에 설치할 수 있게 되었고, 시외 전용회선 분야에서도 특수통신 사업자 참여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NCI사에 중요 도시간 microwave 방식에 의한 전용선 service 영입이 허가 되었다. 또 특수통신 사업자의 전용 service를 위한 Bell계의 시내 전화망의 이용이 안정되는 등 AT&T의 독점체제가 완화되게 되었다. 그 후 컴퓨터 처리 기술의 발달로 통신 서비스와 비통신 서비스 사이에 DP(data processing) 및 복합통신 서비스(hybrid service)가 나타나게 되어 이에 대하여 적절한 영역 조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1971년 제1차 컴퓨터조사(CI-I)의 결정에 따라 복합통신 서비스 사업을 통신법 내의 범주에 포함시키게 되어 AT&T는 복합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으나 DP 서비스 제공은 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전기 통신과 DP 서비스의 발달로 단말기 부분의 기능

이 강화되는 등 CI-I에 의한 복합 서비스 분류방법은 모호하게 되어 제2차 컴퓨터조사(CI-II)에서는 통신 서비스를 기본 서비스(basic service)와 고도 서비스(enhanced service)로 구분하고 AT&T와 같은 지배적 사업자의 경쟁남용 및 반경쟁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배 사업자가 고도 서비스 또는 CPE(customer premises equipment)를 제공하고자 할 경우에는 분리 자회사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1970년대에 이르러 AT&T에 대한 독점금지법 위반에 대한 제소 사건이 급증하여 1974년 법무부가 AT&T에 대하여 독점금지법 위반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이 소송에서 AT&T는 통신사업을 독점하고 타통신업자, 시설업자와 기타 메이커와의 경쟁을 제한할 뿐 아니라 W.E사의 제품에 대하여 부당하게 특허를 주어 취급하므로 법무부는 이것을 시정하기 위하여 AT&T의 분할 해체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하여 AT&T측은 독점금지법의 이론의 기본적인 사고는 독점을 인정할 수 있으나, AT&T는 독점금지법과 양립할 수 없는 규제하에 있기 때문에 AT&T를 독점금지법으로 소송하는 것은 부당하며 통신사업은 공공적인 견지에서 독점적으로 운영하여야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소송에 대한 반대는 AT&T만이 아니고 미국 언론기관을 위시하여 관련된 연방정부에서 비상한 관심을 표시하였으며, 특히 상무부와 국방부에서는 더 비판적이어서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한다고 하였으나 행정부로서는 재판에 개입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AT&T는 궁여지책으로 부득이 법무부와 교섭결과 1982년 8월 소송 종결을 위한 합의 내용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이 합의가 수정 同意審決(modification of final judgement:MFJ)이며 이 합의는 1956년 동의심결을 수정한 것이다. 이 MFJ에 의하면 AT&T는 산하 22개 전화회사(BOC)를 AT&T로부터 분리하여 7개 지역 전화회사(RBOC)를 만드는 대신 AT&T는 도시간과 주간(州間) 장거리 통신 서비스와 단말기 서비스를 계속할 수 있고 공중통신 사업 이외의 진출을 금지했던 1956년 동의심결의 제약을 해제할 수 있게 되었다. 또 data 처리와 기타 정보처리산업 등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되고 Bell 연구소와 W.E사의 소유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1986년 FCC는 고도통신 서비스 시장에 AT&T와 BOC들도 참여할 수 있게 하여 공정한 경쟁을 도입할 수 있게 컴퓨터 III 결정을 채택하였다. 또 연방고등법원

은 지방법원에서 내린 지방지주회사(RHC)에 대한 제조업 금지에 관한 판결은 그대로 지지하였으나 정보서비스에 대한 결정을 번복하는 등 기타 미의회 소위원회 등에서 여러가지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심의가 계속되고 있다.

Ⅲ. 일본의 과정

일본은 전신전화사업이 시작된 이래 전기통신사업을 일괄하여 국가 또는 국가에 준하는 공적 기관에서 독점 운영하여 왔다. 2차 대전 후 미군정의 영향하에 황폐화된 통신시설을 복구하고 급증하는 전화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사업의 독점 체제를 유지하면서 기업운영에 기업적인 경영수법을 도입할 수 있게 1952년 전기통신사업을 우정성으로부터 분리하여 일본전신전화공사(NTT)를 설립하고 1953년에는 NTT로부터 국제전신전화 업무를 분리하여 국제전신전화주식회사(KDD)를 설립, NTT는 국내, KDD는 국제전신전화 사업을 경영하게 했다.

정부는 전기통신 기술의 발전에 따라 많은 새로운 통신미디어가 실용화 되면서 국민의 이에 대한 수요가 현저하게 고도화, 다양화 되어 가고 있고 AT&T의 분리로 미국의 통신기기 무역에 막대한 적자가 발생하여 미국의 시장개방에 대한 강력한 요구도 있어서 단일업체로서는 이에 대응하기 어렵고 또 앞으로 21세기를 향한 고도의 정보화 사회를 형성하기 위하여는 그 기초적인 역할을 할 전기통신 분야에 미국과 같이 경쟁원리를 도입, 전기통신사업을 더욱 효율화, 활성화 시키고자 판례법을 개정, 일본전신전화공사를 일본전신전화주식회사로 민영화하고 전기통신 사업을 자유화시켜 제3자도 전기통신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하였다. 따라서 M/W, 무선, 광케이블, 위성통신 등의 수단을 이용하는 전기통신사업회사가 1985년부터 설립되게 되었다. 그 대표적인 회사가 제2전선(DDI, 자본금 83억엔), 일본 텔리컴(JT, 자본금 90억엔), 일본고속통신(TWJ, 자본금 83억엔), 일본통신위성(JCSAT, 자본금 91억엔), 우주통신(SCC, 자본금 50억엔), 동경통신 Network(TT NET, 자본금 40억엔) 등이다.

Ⅳ. 향후 전망

미국의 전기통신 사업은 자생적으로 발생되어 독립계 전화회사는 한때 난립상태였으나 통합되어 자유경쟁 체제로 운영하게 되었다. 그러나 AT&T는 공공적 견지에서 규제하에 독점운영 되었다.

그러나 자산 400억\$, 매출 700억\$, 종업원 100만 명을 갖고 있는 세계 최대 기업인 AT&T가 그 사업의 장래를 독점금지법 위반이라는 1건의 소송에 의하여 분할 개방으로 결말되었다는 것은 아쉽고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나 그 기본적 이론은 AT&T가 너무 비대하고 지나치게 강력하다는 인식을 정부나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데 있다고도 한다. 항상 흑자를 기록하던 미국통신기기 무역은 AT&T의 분할개방에 따라 1983년부터 적자로 발전되고 미국의 전기통신 기술은 세계 시장에서 항상 지도적 역할을 해왔으나, digital 교환기에서는 France에, 케이블 통신에서는 일본에 뒤지고 있는 형편이 되었다. 이 AT&T의 분할과 개방에 대하여 아직도 찬반이 있으나, 앞으로 분리 개방이 어떤 효과를 가져올 것인가에 대한 공정한 판정을 얻기 위하여는 역사의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통신정책은 경쟁촉진과 여러 규제의 완화를 주체로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일본의 전기통신사업도 자체의 필요성과 미국의 시장개방 요구로 개방자유화가 촉진되었으나 전기통신사업은 국가의 기간산업이므로 그 사업의 근간이 되는 NTT와 KDD는 특수법인으로 하여 주식의 1/3은 정부가 소유하여 그 이익(약 200억엔)은 전액 과학기술 연구기금에 충당하고 사업은 공익상 배당은 10% 정도로 하고 잔여이익금은 요금의 인하등 이용자에게 환원시키고 있다. 또 NTT나 KDD의 주(株)는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의 소유를 배제하여 정부가 통신의 주권을 지키고 있다. 원래 전기통신사업의 경영형태는 미국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국가가 정부직영 체제였으며, 그 후 동남아제국, 캐나다, 브라질, 아르헨틴 및 기타 일부 국가에서 공사화에 의한 경영체제가 되었고 전반적인 규제 완화로 자유경쟁원리를 도입한 민영화된 국가는 미국, 일본, 영국, 필리핀 등 몇개 나라에 지나지 않는다. 대체로 각국의 전기통신사업의 정책목표는 첫단계가 통신의 질적, 양적 충족이고, 다음에는 서비스의 고도화, 다양화에 의한 고도 정보사회의 구축에 있다. 전자의 목표는 전화보급을

40%정도에 이르면 달성되었다고 볼 수 있고, 후자는 목표달성을 위하여 자유경쟁원리에 의하는 국가가 있고 계속 정부가 독점운영하면서 목표 달성을 도모하는 나라도 있다.

우리나라도 미국이나 일본의 예와같이 자유경쟁원리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구한말 우리 통신 주권이 일본에 점유당한 쓰라린 경험에 비추어 사업의 근간이 되는 전기통신사업체는 특수 법인화하여 외교 및 국방상 통신 주권을 확보함이 좋을 것이

다. 전기통신 사업에서는 그 공익성 확보를 위하여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경영이 되어야 하고,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일본에 비하여 그 사업규모가 적으므로 자유경쟁에 치중하여 사업의 과다세분화, 과다경쟁에 의한 시설투자와 그 운영의 중복화 및 시설 운영효율의 저하를 초래하여 이용자의 부담이 증가 될 염려가 있으므로 민영화 촉진보다 당분간 분할과 경쟁을 적절히 규제하여 기업의 육성과 통신기기 국산화에 따라 점진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筆者紹介



申龍徽

1918年 3月 21日生

1943年 9月 경성제국대학 이공학부 전기공학과 졸업

1945年 12月 ~ 1946年 9月 경성대학 조교수

1946年 10月 ~ 1976年 4月 체신부

1976年 4月 ~ 1980年 대한통신공업주식회사 부사장

1981年 3月 ~ 1984年 10月 동남보건전문대학 학장